



## 강 남 구



수신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---

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등의 개정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(동)에서는 2016. 2. 22.(월)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
2.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6. 2. 12. ~ 2016. 2. 22. (10일간)

나. 입법예고내용 : 붙임 공고문 참조

다. 공고방법 : 강남구 홈페이지, 동주민센터 홈페이지, 강남구

구보 공고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.  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## 강남구청장

수신자 실, 담당관, 과 1~35, 서강동(1~22), 보건소(1~4), 강남구의회

★주무관 황세윤 규제개혁법제팀 박도규 기획예산과장 김희주 기획경제국장 전결 02/11  
김용운

협조자

시행 기획예산과-1989 ( ) 접수 ( )  
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  
전화 02-3423-5482 /전송 02-3423-8881 / hsowin82@gangnam.go.kr / 대시민공개